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과-14185
등록일자	2015.6.29.
결재일자	2015.6.29.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보건지도팀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박선희	이순옥	김영수	06/29 서명옥
협조자			

- 함께 나누는 가계부담, 더불어 행복한 강남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계획

추진기간 : 2015. 7월 ~ 12월



대 상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 '15. 4. 1부터 '15. 9. 30까지(6개월간)

지원내용

-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 7. 1일 이전에 분만한자는 7. 1일부터 9.30일까지)
-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명의로 된 은행으로 계좌입금조치

소요예산 : 70,000천원(기금 21000천원, 시비 24500천원, 구비 24500천원)

2015. 6. .

강 남 구
(보 건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지침(복지부)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복지부 신규사업 안내 지침 및 보조금 예산확보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 진행중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및 영유아 																											
분야 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60%;">① 관련부서 협조</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td> </tr> <tr> <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⑤ 시장조사</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자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계획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여 건강한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지침(복지부)

II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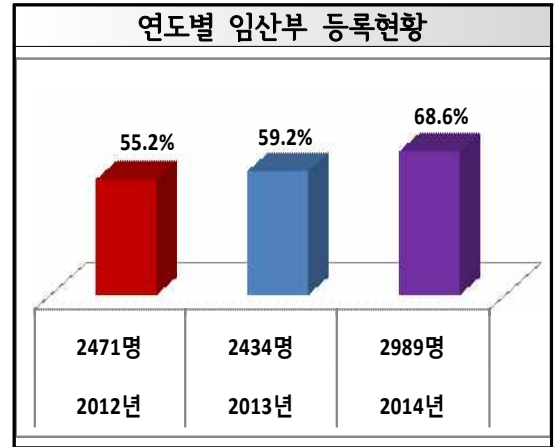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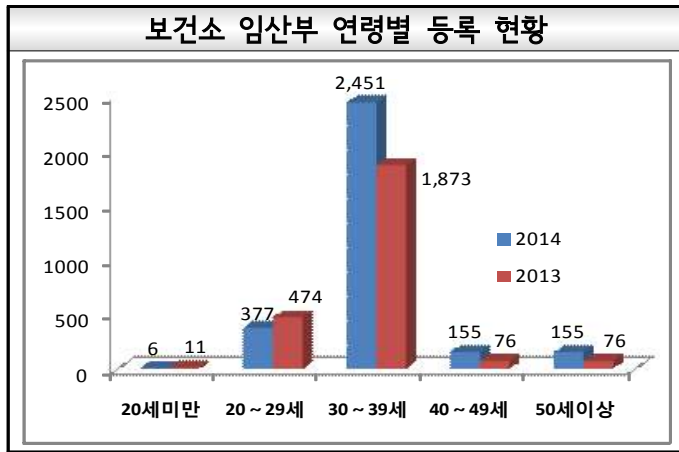
-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만혼 및 늦은 출산의 경향성 뚜렷
- 임신연령대 상승 및 모체의 건강이상 등으로 인한 조기진통, 분만 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는 매년 증가 추세
- 고위험 임산부는 선천성 기형·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는 조기분만 위험성이 높으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
* 37주 미만의 미숙아 6.5%, 2.5kg이하 저체중아 5.5%로 매년 증가('13년 출생통계)
- 영아사망률에 비해 모성사망비는 OECD 평균(8.6명)보다 높다는 점은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
*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 추이 : 14명('05) → 15.7명('10) → 9.9명('12)

현황

□ 보건소 임신부 등록현황

(단위 : 명, %)

구분	출생아수	건강관리율	임신부 등록수					
			합계	20세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2014년	4,351	68.7%	2,989	6	377	2,451	155	
2013년	4,114	59.2%	2,434	11	474	1,873	76	



□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 병원	의원			치과병 · 의원	한방병 · 의원
				소아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2,446	4	34	2	33	49	1,370	597	377

※ 출처 : 강남구보건소 의약과(2015. 1. 1 기준)

□ 모성사망비¹⁾ 추이, 2000-2011



* 자료 : OECD(2010) OECD Health Data 2012: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34 Countries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4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1) 모성사망비 : 출생아 10만명당 모성사망자수

□ 주요 모성사망원인 구성비 추이, 2009-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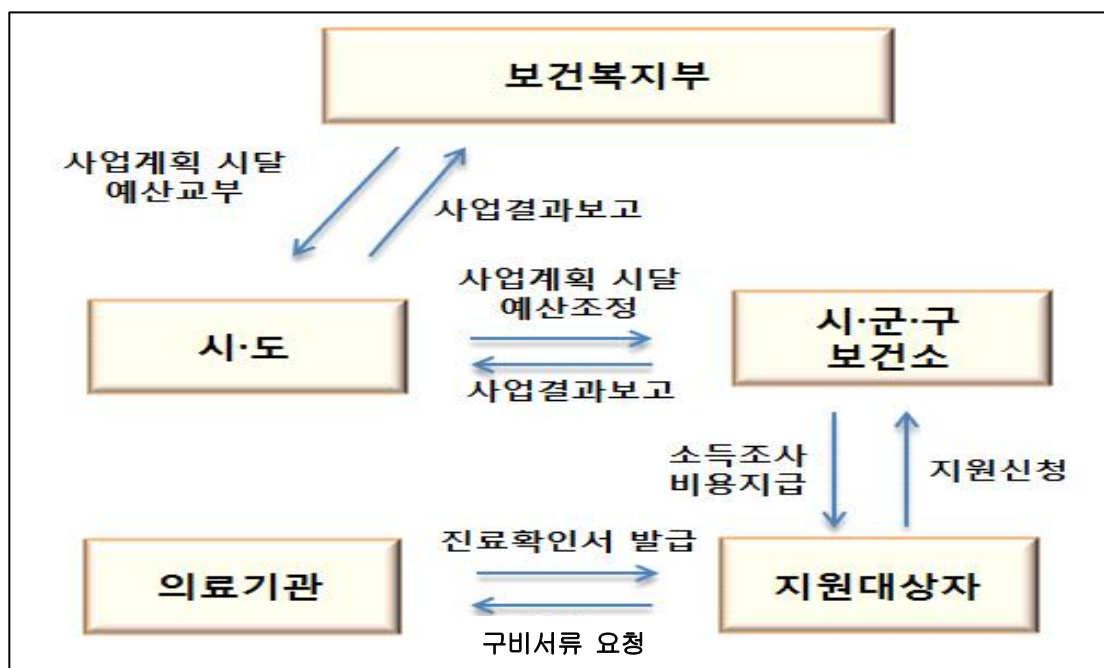
N 사업 추진 체계

■ 지원원칙

-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예산지원의 우선순위가 높은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중심으로 지원

* 3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 체계도



V |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 (소득기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질환기준)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일자) '15. 4. 1부터 '15. 9. 30까지(6개월간)

■ 선정기준

- 소득요건 판정기준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산정부과액을 활용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 가구

【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07,000	70,377	62,319	71,216
2인	4,648,000	141,277	156,072	143,264
3인	6,635,000	202,271	221,301	207,444
4인	7,461,000	226,818	245,357	235,011
5인	7,898,000	243,784	261,503	253,393
6인	8,335,000	253,393	271,273	264,638
7인	8,771,000	277,771	295,557	294,042
8인	9,208,000	294,042	311,530	314,313
9인	9,644,000	294,042	311,530	314,313
10인	10,081,000	314,313	331,617	350,126

■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조기진통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지원기준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조산방지제 투여 및 태아 집중모니터링 등의 입원 치료 받은 자
질병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 분만관련 출혈

지원기간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분만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수혈제제 종류와 관계없이 5팩 이상 수혈을 받거나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을 받은 자
질병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고장애를 동반한 분만중 출혈(O67.0), 기타 분만중 출혈(O67.8), 상세불명의 분만중 출혈(O67.9) ▶ 제3기 출혈(O72.0), 기타 분만직후 출혈(O72.1), 지연성 및 이차성 분만후 출혈(O72.2), 분만후 응고결손(O72.3) ▶ 분만직후 대량출혈(O67, O72)로 자궁색전술 또는 자궁적출술(부분, 전체)을 받는 경우분만이 없는 조기진통(O60.0), 조기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1), 만삭분만을 동반한 조기진통(O60.2), 자연진통을 동반하지 않은 조기분만(O60.3)

○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기준	중증 전자간증 또는 자간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자
질병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간증(O11) : 동반된 단백뇨를 동반하는 임신 전에 있던 고혈압성 장애 ▶ 전자간증(O14) : 유의한 단백뇨를 동반한 임신성 고혈압 ▶ 자간증(O15) : 전자간증 산모가 임신기간이나 분만전후에 전신의 경련 발작 또는 의식불명을 일으키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범위

- 3대 고위험 임신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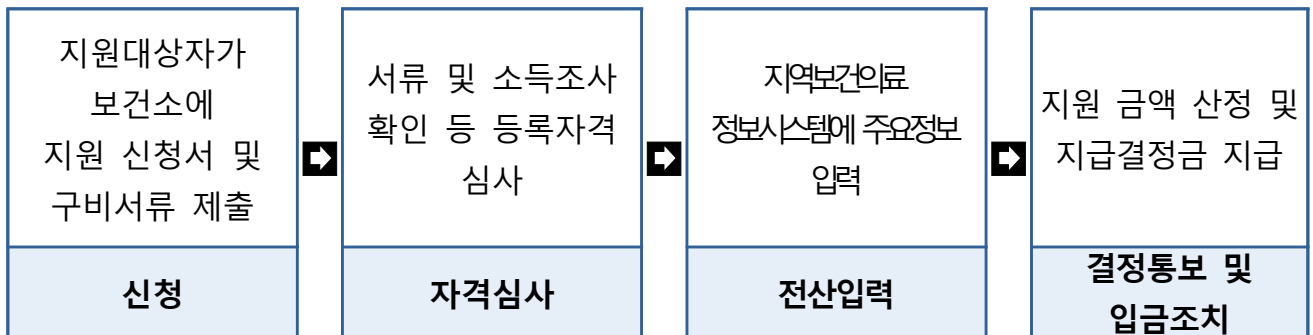
급 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등
법정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비 지원		지 원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의료비지원 절차



● 구비서류

-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설문조사서 1부.
-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 사산증명서는 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지원신청 기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

● 지급기간

-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에 지급

- 연도 말에 의료비 지원신청을 하여 확인·검토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넘긴 경우 또는 당해 연도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차기연도 예산집행 시점 이후에 지급 가능

VI | 추진일정

추진내용	월별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수립	★						
홍보	★	★	★	★	★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	★	★	★	★	★
사업평가							★

VII | 예산

■ 70,000천원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 예산과목 : 보건과,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산모건강관리,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 2015년도 확정내시 공문 시행 후 7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추경 진행중임.

VIII | 기대효과

□ 의료비 지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감소로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안정 도모.

□ 적극적인 치료 유도로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

첨부.

1. 지원신청서 2부.
2. 설문조사서 1부.
3.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끝.